

(주)하나자산신탁 공고 제2020-0601호

도시계획시설(광로2-3호선 외 11개소,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경관녹지)개설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9-58호(2019. 02. 01)로 반정2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화성시 고시 제2019-503(2019. 10. 16)로 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 반정동 38-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광로2-3호선 외 11개소,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경관녹지)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6. 05

(주)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위 치	보 상 내 역
도시계획시설(광로2-3호선 외 11개소,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경관녹지)개설공사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38-4번지 일원	○ 토지(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토지(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며, ○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2. 보상계획

- 1)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하여 보상가격 결정 후 개별통지(다만, 관할 시·도지사 및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 보상
- 3) 보상시기 : 2020. 08월경(추후 개별통보 예정)
- 4)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업 시행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 1) 기 간 : 2020. 06. 05(금) ~ 2020. 06. 19(금)(15일간)
- 2) 장 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TEL:031-5189-2467)
 - 보상사업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5로 33(죽백동, 세무타워201호) TEL:031-681-9091

5. 열람 공고 : 토지 조서 등 열람 (따로 붙임)

6.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